



보도시점 2025.11.23.(일) 낮12시 배포 2025.11.21.(금) 14:30

“내 디자인인데 남이 먼저 등록?”

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

-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에
대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('25년 11월 28일) -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·시행규칙이 '25년 1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.

<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>

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‘심사주의’를 채택하고 있으나, 패션·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*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‘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’를 운영하고 있다.

* 의류, 직물지, 문구류, 신변품, 포장 용기, 식품, 장신구 등

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
또한, 잘못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,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짧아 제도를 활용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많았다. 이번 개정에서는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*라면,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(단,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내)라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 이를 통해 부당한 디자인권이 빠른 시일 내에 취소되어, 거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*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나 소장을 받은 경우,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

<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>

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.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 받은 경우,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한다.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, 이번 개정은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여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‘디자인권 이전청구’ 제도를 도입한다. 향후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키고 다시 등록을 받거나 법원에 직접 ‘디자인권 이전’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,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.

이외에도,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‘창작내용의 요점’을 삭제하여 출원 편의를 개선한다.

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“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,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”며 “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미순 (042-481-5331)
		담당자	서 기 관	손은미 (042-481-5766)



□ 디자인 일부심사제도

- (개요) 패션·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등록을 부여하는 제도
- (운영경과) '98년 3월 도입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로카르노 대분류 기준 7개 물품류 운영 중
- 심사출원과 일부심사출원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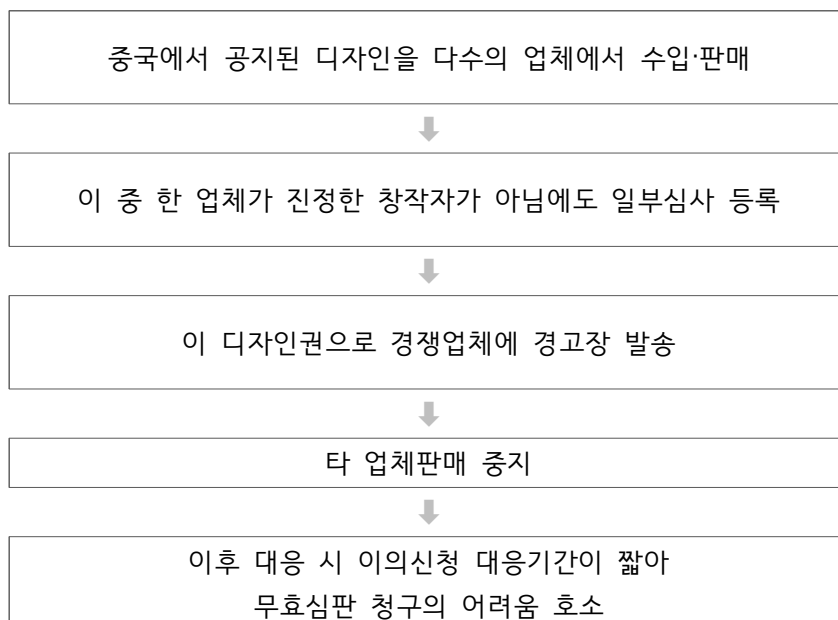
구분		디자인일부심사출원	디자인심사출원
출원료(전자출원 기준)		1건당 45,000원	1건당 94,000원
심사범위	공업상 이용가능성	심사출원과 동일	성립요건, 도면방식 등
	신규성	명백한경우가결정(조11)	선행디자인과 유사여부 판단
	창작 비용이성	주지형상 디자인	공지디자인 결함, 주지형상 디자인
	부등록사유	심사출원과 동일	공익표장유사, 공서양속위배 등
출원건수('24년)		22,842건(전체출원의 40%)	33,653건(전체 출원의 60%)
심사처리기간('24년)		착수 0.7개월	착수 7.0개월(우선심사 포함)
중간서류 처리		1개월 이내	2개월 이내

<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 운영 경과 >

제1로 도입('83)	1·2·3차 확대('08.1~'11.4)	축소('14.7)	확대('20.12)
한국분류 5개류	1차: 한국분류 6개류 ('08.1.) 2차: 한국분류 10개류 ('10.1.) 3차: 한국분류 18개류 ('11.4.)	로카르노 대분류 3개류	로카르노 대분류 7개류
B1(의복), C1(침구), F3(인쇄물), F4(포장용기), M1(직물지)	1차: A1(식료품) 추가 2차: B2(의류), B5(신발), F1(교습구), F2(사무용구) 추가 3차: B3(신변용품), B4(가방), B9(의류부품), C4(가정보건용품), C7(경조용품) 등 추가	2류(의류, 패션잡화) 5류(섬유제품) 19류(문구류)	1류(식품) 2류(의류, 패션잡화) 3류(가방, 신변용품) 5류(섬유, 직물) 9류(포장용기) 11류(보석, 장신구) 19류(문구류)
출원량의 18%	출원량의 20% → 25% → 38%	출원량의 20%	출원량의 43% (24년 7월)

- 디자인일부심사제도는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등록을 부여하고자,
 - 신규성과 선출원에 대한 선행디자인 검색 없이 등록을 허용함
- 그런데 일부심사출원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된 디자인을 등록받거나 등록취소·소멸된 디자인권과 동일한 디자인을 다시 등록받아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짐
- 그러나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없어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
- 이에 심사관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신규성 및 선출원 위반의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
-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실권리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□ 민원사례



□ **주요 개정 내용**

1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출원*에 대해서도 명백한 신규성·선출원 위반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및 이의신청 기간 확대

*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

① 디자인일부심사 등록출원의 심사 강화(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5항 신설)

현 행		개 정
(일부심사 거절이유) 신규성x, 선출원x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	→ → →	(일부심사 거절이유) 신규성·선출원을 위반하는 '명백한 거절이유'에 대해서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 하더라도 거절 가능

②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 기간 확대 (제68조제1항 개정)

현 행		개 정
(이의신청 기간 및 주체) 디자인등록공고일로부터 누구든지 3개월	→ → →	(이의신청 기간 및 주체) 좌동 + 침해통지를 받은 자*는 통지받은날부터 3개월 (단,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)

*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·소장을 받은 경우,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

2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여 무권리자 권리를 무효화하고 재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*

* 특허법에 따른 특허 이전청구제도 ('17.2~)와 동일한 절차임

- ①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근거 마련 (제96조의 2 신설)**
- ② 이전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의 제한 (제121조 개정)**
- ③ 정당 권리자 명의 디자인등록증 재발급 (제89조 개정)**
- ④ 선의의 무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상실시권 부여 (제100조의 2 신설)**

3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관용적으로 기재되어 온 '창작내용의 요점'의 기재란을 삭제하여 출원서 작성을 간소화 (제37조제2항제2호, 제181조제3항 개정)

*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

□ 개정 배경

-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('25.5.27.)에 따라, 개정 법률 시행 ('25.11.28.)과 관련된 시행령,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
-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권리자 보호 강화 및 출원인 편의 제고

□ 개정 내용

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반영

- 이전등록을 받은 정당권리자에 대한 디자인등록증 재발급 규정 마련 (시행규칙 §50③, §66① 개정)
- 디자인등록출원서 서지사항에 '창작내용의 요점' 삭제 반영(시행령 §10②③, 시행규칙 §35④, §61② 및 별지 제4호·제5호 서식 개정 등)

② 기타 개정 수요 반영

-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대리인 선임 간소화*(시행규칙 §7②)
 - (기존) 지정기간 연장만 위임장 첨부만으로 대리인 선임 효과 부여
 - (개선) 모든 기간* 연장에 대해 위임장 첨부로 대리인 선임 효과 부여
- * (현행) 의견서·보정서,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기간연장신청서, 우선권·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증명서류 등의 제출시 + (추가) 재심사 청구기간 연장 및 거절결정 이후 심판청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위임장 첨부만 가능
-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서식(DM/1)개정에 따른 국내법령 서식의 현행화 등(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등)